

## 소규모합병 공고

주식회사 네오위즈는 2019년 4월 10일 주식회사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상법 제527조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### 1. 합병 당사회사

가. 존속법인: (주)네오위즈 (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)

나. 소멸법인: (주)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(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)

2. 합병방법: (주)네오위즈가 (주)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(주)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는 소멸함.

3. 합병비율: (주)네오위즈 : (주)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= 1 : 0

(주)네오위즈가 (주)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,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1:0으로 하고,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)

4. 합병기일: 2019년 6월 17일

5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: 2019년 4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양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나. 행사기간: 2019년 4월 24일 ~ 2019년 5월 8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1) 명부주주: 2019년 5월 8일까지 아래 주소로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

우편 송부처: [13487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 (주)네오위즈 IR팀 주식담당자 앞 (☎ 031-8023-6600)

2) 실질주주: 2019년 5월 2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 2019년 5월 8일까지 당사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.
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
2019년 4월 24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  
주식회사 네오위즈 대표이사 문지수

※ 별첨: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##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네오위즈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주식회사 네오위즈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네오위즈와 주식회사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9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주민등록번호(앞 6자리 기재):

주소:

연락처: